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9월 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고령화 사회에 따라 증가하는 어르신 복지 수요에 맞춰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 복지 전담부서인 어르신복지과로 재편하고, 업무별 성격에 따라 팀을 조정하며 동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 복지 전담부서로 재편 (안 제6조)

- 어르신청소년과 ➡ 어르신복지과

나. 아동청소년 업무 분리 등 업무성격에 맞는 팀 조정 및 업무 이관 (안 별표1)

- 도서관정책팀 : 교육지원과 → 문화체육과

- 드림스타트팀 : 어르신청소년과 → 복지정책과

- 청소년 업무 : 어르신청소년과 → 교육지원과

- 아동 업무 : 어르신청소년과 → 여성가족과

다. 동 분장사무의 명확화 및 구·동간 업무체계 재정립(안 별표4)

- 분장사무가 업무내용을 포괄하도록 조정

·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지원 → 직능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- 동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무 반영
- 즉시처리 가능한 민원처리 추가(청소, 주차단속, 불법부착물 제거)
- 마을사업 관련 분장사무 신설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-구정소식-공고-입법예고)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(03718)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(연희동)

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2-330-1054, 팩스 02-330-1449